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
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
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
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3월 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시행)과 관련하여,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,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 등(안 제2조)
- 위원회 존속기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
- 구성인원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제5항에서 정한 인원 범위내
- 회의(안 제4조)
 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소집
 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

- 위원회의 직원(안 제5조)
 -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, 구 소속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.
-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(안 제6조)
 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
 -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가능
- 수당 등(안 제7조)
 -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등 지급
-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(안 제8조)
 -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기획조정과장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, 전화 : 02-3396-4904, 팩스 : 02-3396-8657, email : ssanghun0203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*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지원)

-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지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지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)

-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

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규정에 따라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

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